

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함.

2) “甲” 법인의 현물출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었음.

【질의배경】

가. 내국법인(甲법인)과 외국법인(乙법인)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신설법인(丙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2항 규정에 대한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에 동법 제119조 제1항7호 및 제120조 제1항6호에 의하여 취·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신설법인(丙법인)은 1999.5.20 과세관청의 취·등록세 감면확인을 받아 감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였음.

나. 그러나, 과세관청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입법취지나 구조조정에 의한 신설법인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 취지는 이해되나 “갑” 법인과 “을” 법인은 신설법인 설립일인 1999.4.20에 丙법인의 주주로서 특수관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2항 내용은 “공동으로 출자한 자간에 법인설립 직전까지 특수관계자가 아닌 경우에 한하여 면제한다”라고 명확하게 구체적인 문구(직전까지)가 있지 아니한 이상 신설법인 설립과 동시에 법인의 주주가 되어 특수관계가 성립되므로 과세권자는 면제된 취·등록세를 추징해도 된다는 주장임.

【질의내용】

<질의 1>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7호 및 120조제1항6호 규정의 취·등록세 감면 요건인 동법 제38조의 2항 규정의 특수관계 성립시기는 공동출자한 甲법인과 乙법인이 신설법인 법인설립전(1999.4.20)까지 특수관계가 없다면 현물출자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및 120조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귀부의 유권해석은?

<질의 2> 신설법인인 丙법인이 설립이전까지 “甲”법인과 “乙”법인의 관계는 “丙”법인에 공동출자한 사실 이외에는 다른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 “甲”법인의 현물출자에 대하여 조세특례법상 현물출자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및 제120조 규정에 의거 취·등록세 면제 대상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